**에너지소재전공 재정지원제도**

**재정지원제도란?**

*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를 수행하면서 받는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의미
* 재정지원제도는 펠로우십(Fellowship), 학생조교수당(Assistantship), 기타지원금(Other Grants)으로 구분

**재정지원제도의 특징**

* 이중수혜 허용: 내외부 장학금의 이중수혜를 허용함 (단, 정부 등 외부규정 우선적용)
* 지급상한 폐지: 개인별 상한금액을 폐지함(단, 정부 등 외부규정 우선 적용함)
* 성과기반 R/A 운영: 입학 후 첫 학기에는 매년 대학에서 공표하는 기준장학금 이상의 금액을 모든 학생에게 지급하나 두 번째 학기부터는 학생 개인의 성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

**펠로우십(Fellowship)**

* 펠로우십은 순수한 장학 목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내부, 외부펠로우십으로 구분함
* 내부펠로우십은 교비, 학과기금, 외부재단에서 기부한 기금 등으로 운영하며, 선발은 대학 내부에서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함
* 외부펠로우십은 정부, 외부장학재단 등 외부기관에서 직접 선발하며, 장학금은 외부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거나, 외부기관에서 대학으로 입금하고 대학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함

**학생조교수당(Assistantship)**

* 학생조교수당은 대학원생이 교육활동, 연구활동, 행정지원업무 등에 참여하면서 지급 받는 근로성 장학금이나 인건비를 의미하며, 교육조교수당, 연구조교수당, 행정조교수당으로 구분함

**2021년도 조교수당 기준금액(월기준)**(단위: 원/월)

| **구분** | **등록금보조** | **생활비보조** | **합계**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석사과정 | 797,000 | 570,500 | 1,367,500 |
| 박사과정 | 797,000 | 1,047,000 | 1,844,000 |

지급금액은 가이드라인으로 교수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교수의 재량에 따라 추가생활비 지급 가능함

* 지급일자: 매월 25일(지급일이 휴일이면 전일에 지급)
* 직전학기 학사경고자는 1학기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(인건비는 해당되지 않음)

**기타지원금(Other Grants)**

* 펠로우십과 조교수당을 제외하고 지원받는 모든 재정지원을 의미함

**POSCO Chemical 산학장학제도**

| **구분** | **등록금보조** | **생활비보조** | **지원기간**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석사과정 | 본인부담금 전액 | 1,500,000 | 6학기 까지 |
| 박사과정 | 본인부담금 전액 | 2,000,000 | 10학기 까지 |

* 전환채용 요건 미달시 지원금 환수하며, 전환 후 3년 이내 퇴직 시 지원금 월할 환수
* 본인 사유에 의한 휴학/졸업유예는 1학기로 한정
* 장학생 선발 관련사항은 입학 후 안내

**※산업체 재직자는 재정지원제도 수혜 대상 아님**

**※재정지원 기준은 2022학년도 기준이며,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**